

[별지 서식]

## 사 망 증 명 서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① 사 망 자	등록기준지						
	주 소						
	성 명	한 글		한 자		주민 등록 번호	
② 일 시	년 월 일 시 분						
③ 장 소							
④ 사망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)							
⑤ 증 명 인	등록기준지				전화번호		
	주 소						
	성 명	(인)			관 계		
	등록기준지				전화번호		
	주 소						
	성 명	(인)			관 계		

첨부서류: 증명인의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사본, 운전면허증사본, 여권사본, 공무원증사본 중 1부. 다만, 증명인이 동(리)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.

## 작 성 방 법

1.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(여권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)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
  - 가.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시(구)·읍·면사무소에 직접 출석 하여 시(구)·읍·면의 장(동장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
  - 나. 시(구)·읍·면의 장(동장을 포함한다)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제시 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의 여백에 "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"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.
  - 다. 증명인은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.
2.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3. ㉓란은 사망한 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
4. ㉕란의 증명인이 동(리)장 및 통장(이하 "동장 등"이라 한다)일 경우에는 동장 등임을 증명하는 서면만을 첨부하고, 관계인란에 "OO시(군) OO구(면) OO동(리)장 또는 통장"이라고 기재하며 동장 등 1명의 증명이면 됩니다. 단, 사망신고 당시 동장 등이 사망신고지 관할 시(구)·읍·면(동을 포함한다)지역에 현재 재직하고 있어 접수담당공무원이 동장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담당공무원이 사망증명서 여백에 "동(리)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"라고 기재하고 그 실인을 찍어 동(리)장 또는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5. ㉕란의 증명인이 동장 등이 아닌 때에는 2명을 모두 기재하며, 관계란에는 "이웃사람" 등으로 기재합니다.